

# 우리나라 설계자/감리자의 클레임 대응방안 연구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for Engineer/Designers' Risks in Korea

-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조영준\*

Cho, Young-Jun,

박홍식\*\*

Park, Hong-Sik,

김성빈\*\*\*○

Kim, Sung-Bin,

박경남\*\*\*

Park, Kyung-Nam

## 요약

건설클레임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계자/감리자가 당면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키워드: 클레임, 설계자/감리자, 클레임전문교육시스템, 클레임 전문가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클레임 중에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은 그다지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설계자나 감리자에 기인하여 클레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시공자의 건설클레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 2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의 거의 10여년이 경과하고 있으면 이로 인해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감리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건설 클레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실제로 설계자와 감리자와 관련된 클레임은 전문책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클레임으로 비화될 경우 설계자나 감리자의 자체재무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많은 설계자나 감리자들은 클레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조영준와 1인 2007).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설계자/감리자와 관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내용 및 목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활동하고 있는 설계자/감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인터넷,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학회 등의 발표된 논문, 보고서 등의 자료를 조사한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에서 설계자/감리자 클레임에 대해 의견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설계자/감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2. 설계자/감리자의 기본적 책임

### 2.1 설계도서와 감리자의 역할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결과가 문서 또는 구두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

\* 종신회원,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한다.

설계도서나 시방서의 불일치, 모순,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를 설계변경의 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설계단계에서의 설계도서의 모순, 누락, 불일치 등이 발생하고,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의 쌍방책임 문제로 국한되지만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자와 감리자가 공사에 개입하게 되어, 설계자와 발주자와의 문제가 설계자-발주자-감리자-시공자의 문제로 매우 복잡해진다.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시공이 이루어진 후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는 책임관계가 매우 복잡 미묘하다.

## 2.2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이고, 보험에서도 설계자를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전문책임보험(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에서 명시하는 설계자의 전문책임은 설계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설계자의 계약적 책임으로 구현된다. 물론 설계자와 발주자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교차책임(Cross Liability)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포괄적으로 계약적 책임으로 표현한 것이다.(박준기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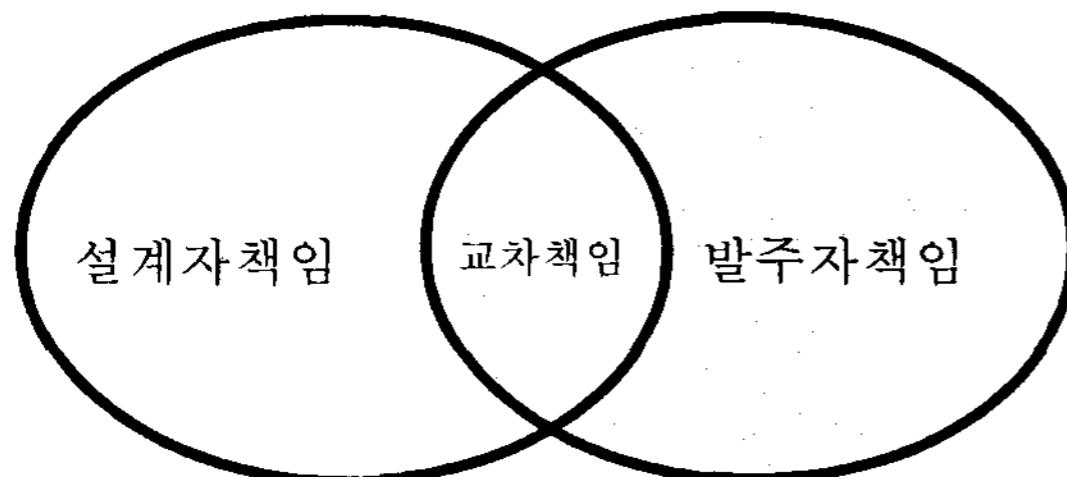


그림 1. 설계자의 계약적 책임

설계자는 계약적 책임이외에도 관련법('건축사법', '기술사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령의 위반사항이 되어 형사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나 제3자에 대해 재산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민사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설계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른 설계자에게 의뢰하더라도 합리적인 주의, 기술,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맞도록 합리적인 주의, 기술, 능력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 2.2.1 설계자의 계약완수에 대한 책임

설계자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책임(Liability)지게 된다.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단순하게 설계자가 계약적 의무를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이며 그 결정의 요체는 발주자와 설계자사이의 계약의 해석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이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함축적인 언어로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계약의 원칙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

### 2.2.2 설계자의 대가지급에 대한 책임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그려하듯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임금·급여, 하수급자·납품업자 등에 대한 하수급대가 또는 납품대가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2.2.3 설계자의 담보책임

설계자는 민법 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2.2.4 설계자의 전문기술제공의무에 대한 책임

설계자의 전문기술제공의무에 대한 분쟁은 의료분쟁과 마찬가지로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문기술제공에 대한 기준을 계약의 특수한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 것과 전문적 기준의 개념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행한 실수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도 명확한 지침은 될 수 없고 일반적인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개 전문적인 책임의 일반적인 원인은 전문적인 기술제공의 태만에 기인한다. 설계자와 엔지니어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제공사항은 의사,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들과 유사하다. "엔지니어의 기술제공사항에 대한 기준"<sup>1)</sup>에서 구체적으로 설계자는 "... 그가 고용되어진 목적을

1) *Paxton v, County of Alameda, p259 (Cal. 1953)* 엔지니어의 기술제공사항에 대한 기준 : 고객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통 훌륭한 조건을 갖춘 설계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학습 및 기교의 정도와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할 의무가 있는 설계자들과 동일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표현해야 한다. 설계자가 그의 기술제공업무를 동일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명성이 있는 요원에 의한 기술제공사항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의무이며 그가 고용되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노력에 대하여 그의 학습을 적용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가 최선의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도 그의 의무이다.

수행하기 위해 제공 되어지는 노력에 대하여 그의 학습을 적용하고 기술을 제공하는데 그가 최선의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설계자가 태만하지 않고 동일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자와 같이 최선의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설계자의 전문기술제공에 대한 책임은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이며, 설계자가 다른 설계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의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설계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엄격한 판단을 내린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설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발주자 또한 전문가에 대해 무결점을 기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경쟁과 기술을 기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sup> 또한 법정에서는 전문가의 태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쟁점사항이 상식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 전문적인 증거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sup>3)</sup>

### 3. 설문조사

#### 3.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7년 3월 10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계자/감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의 협조를 얻어 대전소재 건축사사무소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보내준 82부를 회수하였다.

다음은 설문조사 분석결과이다.

2) *Allied Properties v. John A. Blume and Associates, Inc., 102 Cal Rptr. 251(1972) - by Richer, Irvin 1인(1982). Handbook of Construction Law and Claims, Reston Publishing Company, Reston, Virginia*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는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구성원들과 정상적인 기술과 경쟁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전문가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결점을 기대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고, 단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기술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지 보험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Huber, Hunt and Nichols, Inc. v. Moore, 136 Cal. Rptr. 603, 1977*

전문가의 전문 업무 내에서 용인된 기준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기소된 경우, 그 기준이 일반 상식의 수준이 아닌 한, 용인된 기준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견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사항이 상식의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지식에 포함될 경우 전문적인 증거는 결정적이고 무시될 수 없다.

#### 3.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근무 중 클레임을 제기당한 회수는 평균 1~2회에서 10회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클레임은 발주자로부터 44%정도 제기되었고, 인근주민들로부터도 26%나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공결함과 설계미비가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클레임과 관련된 교육은 이수한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클레임이 제기된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88%를 점하고 있어 분쟁으로 인한 두려움을 혼자서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자/감리자와 관련된 건설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 100명 정도 이상의 인원이 배출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클레임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클레임 전문가가 활동하는 방법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컨설턴트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전체의견의 74%)를 점하고 있었다. 클레임 전문가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어떠한 형태의 자격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설계자/감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조속히 전문가책임보험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위에서 조사한 설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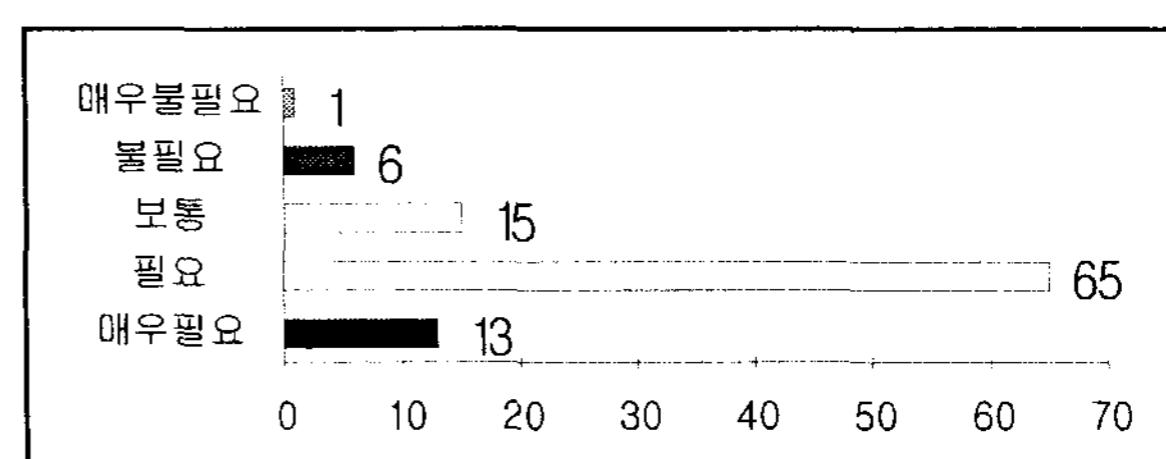


그림 2 클레임 전문교육 전문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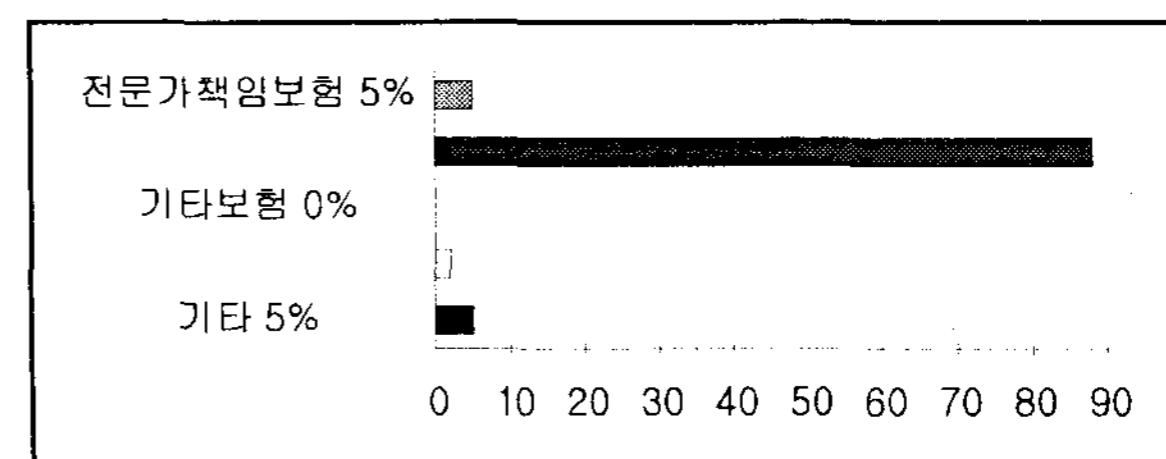


그림 3 문제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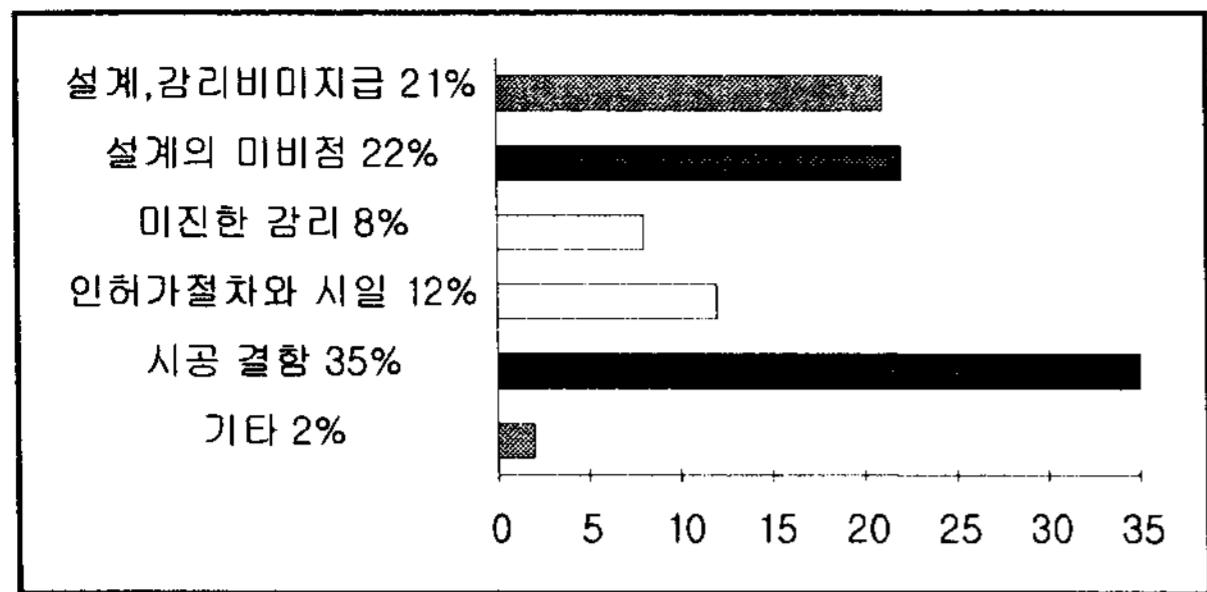


그림 4 클레임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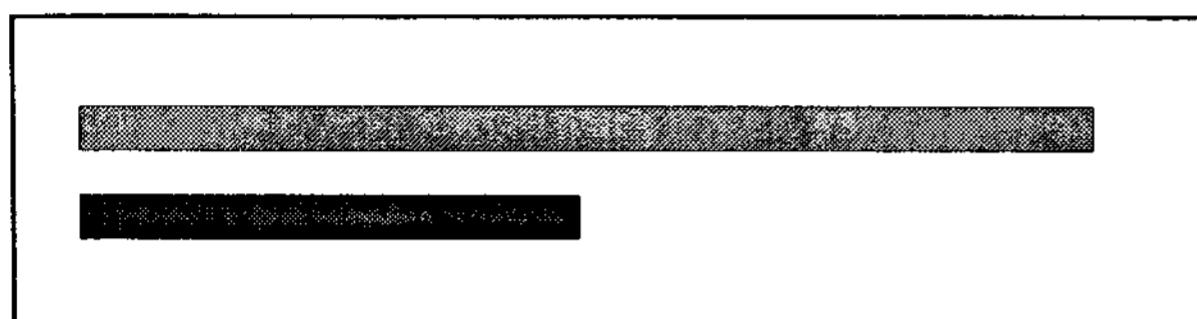


그림 5 전문책임보험의 도입 필요성

#### 4. 결 론

설계자/감리자는 건설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당사자이다. 설계자/감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클레임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판결도 현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자/감리자와 관련한 다양한 클레임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으며, 더욱이 그와 관련된 클레임이 판결문으로 정형화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전지역에 있는 설계자/감리자를 대상으로 클레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 중 몇 가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결함과 시공결함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둘째,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클레임 전문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설계자/감리자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전지역의 설계자/감리자들은 자신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고, 느끼던 클레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기간 및 연구제약조건에 따라 대전지역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국적인 연구가 실시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제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Paxton v, County of Alameda, p259 (Cal. 1953)
2. Allied Properties v. John A. Blume and Associates. Inc., 102 Cal Rptr. 251(1972) - by Richer, Irv 외 1인(1982). Hand book of Construction Law and Claims, Reston Publishing Company, Reston, Virginia.
3. Huber, Hunt and Nichols, Inc. v. Moore, 136 Cal. Rptr. 603, 1977
4. 박준기, 건설책임론, 기공사, 1997
5. 박홍식, 조영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설계자/감리자 클레임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산학 협력단, 신화 엔지니어링, 2007
6. 조영준, 설계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전문책임보험 도입방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제10호 통권96호, 1996.10
7. 조영준 외,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 및 클레임 대응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4~1995

#### Abstract

The volume of Construction project is increasing now in Korea. The complexity and variety makes the project many problems. But there are few construction contract experts. This results in a lot of managerial conflicts. Specially Engineer/Designer confront gigantic risk related to their job. So, to classify and to identify the risk practical investigation about Engineer/Designer's job.

Therefore, to avoid and to prevent the claims for Engineer/Designer,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service, use of external claim expert, and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accomplished.

**keywords:** Claim, Engineer/Designer, Educational system for claim expert, Risk